



일본 골판지포장산업의 이해와 개요 ⑥

일본의 골판지산업의 탄생에서 지금까지의 발전사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골판지업계 종사자들이 미래의 골판지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본골판지공업회와 일본전국 골판지공업조합 연합회에서 발간한 “골판지수첩”을 번역하여 원문의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하오니 골판지업계 종사자 및 독자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번역 작업은 국민대 임산공학과 김형진 교수에게 의뢰하였으며, 연재후 우리나라 골판지업계의 역사를 담아 새롭게 재구성하여 “골판지포장 실무편람”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제5장

골판지 산업의 사회적 책임

1. 독점금지법
2. 제조물책임법(PL법)
3. 순환형 사회형성 관련법
4. 환경보전관련법



제 5 장 골판지 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에워싸는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그 사회적 책임이 한층 주목되고 가격 카르텔의 금지, 제조물에 대한 안전보상 등 모든 기업의 행동윤리가 보다 엄격하게 묻도록 되었다. 또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나 특정 화학물질관리촉진법 등 골판지 기업의 활동은 다양한 법령의 테두리 중에서 운영되고, 그들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에서 존속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골판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법률은 모두 기업 활동에 깊게 관계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독점금지법, 제조물책임법, 순환형 사회형성 관련법, 환경보전관련법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골판지의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제 6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1) 독점금지법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적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소위 독점금지법은 자유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우리나라 경제의 민주적인 건전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업활동의 률을 나타내고 있다.

독점금지법은 상거래의 근간을 나타내는 법률이고 그 운용을 틀리게 하면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발췌하고, 간단한 설명을 가한 것으로, 충분한 법률의 해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을 사내의 법무담당이나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

1) 독점금지법의 목적

이 법률은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의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그 외 일체의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함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를 발휘시켜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고용 및 국민 실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그로서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함께 국민경제의 민주적인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금지법 제 1 조]

2) 독점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독점금지법은 관계법령을 포함한 기업의 행동에 대해 다수의 제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별하면 다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적독점의 금지

사적독점으로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지배함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2)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는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 생산이나 판매수량을 제한하기도 하며, 혹은 거래처에 제한을 가하기도 하는 등 상호에 사업활동을 구속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3)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는 부당하게 타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부당한 대가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하고 있다.

[제 2 조 및 제 19 조]

또한 사업단체에 대해서도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 3 장 (사업자단체) 제 8조 (금지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

- 부당 또는 불공정한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일정한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
-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 사업자에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

3) 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예

독점금지법의 위반행위는 극히 넓은 범위에 까지 미치고 있지만 일상의 사업활동 중에서 특히 관계가 깊은 영업부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충분히 주의하여 행동하게 하고 싶다. 영업부문 만이 아니라 타 부문에 관한 사항, 하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것.

(1) 주로 영업부문에 관한 것

① 동업자 간에 가격 및 그 인상, 인하 폭이나 가격의 유지, 개정시기 등의 합의를 행하기도 하고 정보교환을 행하는 것이나 판매량 등의 약속을 행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입찰에 대해서의 화합이나 약속도 물론 위반이고 구두로 합의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카르텔, 입찰담합의 금지]

② 특정의 싸게 파는 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업자에게 납입하고 있는 원단이나 상자 혹은 원지나 제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또는 중단하는 납입업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동업자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위법이다.

[공동 및 단독의 보이코트 금지]

③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골거래처의 쉐어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속적으로 타 지역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 또는 원가나 매입가격을 밀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극단적인 거래조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일시적인 재고처분, 수급관계에 의한 하락가격은 위법이 아니다. 시장 쉐어를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싸게 파는 것을 단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문제지만 판단은 대단히 어렵다)

[차별 대가, 차별 취급, 부당 업가판매의 금지]

④ 거래처의 사업활동이나 그 판매가격을 구속하기도 하고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기로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그 거래처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를 요한다.

[구속조건 거래, 배제조건 거래, 재판매 가격의 구속, 끼워 넣기 판매의 금지]

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의 사업내용이나 판매량 등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의해 정당한 상습관에 대조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상대편에 줄 경우 혹은 상호에 거래가 있을 때에 상대방이 우리 쪽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거래를 정지 또는 구입량을 삐감하는 등으로 상대방에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는 위법이 된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상호거래의 금지]

⑥ 동업자와 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하게 방해(협박, 위압 등)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의 금지]

(2) 단체활동 중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① 동업자와의 회합으로 가격인상이나 가격에 관한 제안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석하지 않으면 카르텔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때에는 회사명과 반대의사를 전하고 퇴석하고, 상사 등에 그 취지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문서로서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하지 말고 구두에 의한 암묵의 합의에서도 카르텔이 된다.

③ 업계 중에서 특정지역이든 전지역이든 상품의 가격이나 코스트를 조사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것이 판매가에 관한 것이 아닐 때 판매가의 지표로 간주 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순수하게 경영지표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할 경우에서도 가격이나 원가의 조사에 대해서는 평균치 외에 최고, 최저의 수치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자격과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단체 구성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또한, 구성회원에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행하는 것도 단체의 위법행위가 된다.

● 구매·자재, 생산·하청, 노무·총무부문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4) 독점금지법에 대한 업계의 대처

일본골판지공업회, 전국골판지공업조합연합회는 경제활동의 기본인 시장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적 규범인 독점금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업계의 기본 방침으로 하여 업계 전체에 대해 철저를 도모해 왔다.

1985년 長谷川薰 일본골판지공업회장(현 령고(주) 회장)은 「시장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을 강하게 호소하고, 독점금지법에 저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취지를 이 사회에서 결의하고, 더욱이 전문부회로서 독점금지법연구회를 발족시켰다.

1992년 4월에는 일본골판지공업회는 업계로서 독점금지법 준수 매뉴얼을 작성하고 회원 및 관계방면에 배포하고 그 이해와 준수를 어필했다. 한편, 회원각사도 각기 독자적으로 사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무면에서 대응의 지도·교육을 행하여 왔다.

이후, 일본골판지공업회는 전국 각지에서 독점금지법의 강연회나 연구회를 통해 독점금지법을 엄수하는 것, 즉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업계의 발전을 초래하여 나아가서는 기업의 번영에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이해를 구해 왔다. 오늘날 이 연구회는 법무위원회로 개칭되었지만 그 정신이 널리 업계에 전해져서 시장원리 사상이 정착되기 에 이르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PL법)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소위 PL(Product Liability)법은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기업의 제품이 「결함」에 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 등이 배상책임을 물을 것을 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나서 소송건수가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 제조업자 측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편 소비자 측의 관심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싹터감에 따라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은 맹대하게 된다고 생각되며, 또 해외에서는 한번의 사고로 기업이 파멸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하기도 하여 결코 제조물 책임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그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람의 목숨, 신체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정해진 것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 1 조)

제조물 책임의 규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의 결함 (통상 존재하는 안전성의 결여)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이에 따라 생긴 손해를 제조업자 등(메이커, 가공업자, 수입업자, 발매원 등)이 배상한다.

(2)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함에 의한 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 청구권의时效에 의한 소멸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법정 대리인 포함)가 배상 의무자를 알고부터 3년간 경과한 때

②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하고부터 10년간 경과한 때

③ 신체에 축적된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잠복기간을 경과하여 증상이 나타난 손해는 그 손해가 생긴 시점부터 상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2)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업계의 대처

일본골판지공업회는 1995년 10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PL법연구회(현 법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총무·법무, 제조·기술, 영업·업무의 각 부문에서 선출된 10명의 위원에 변호사를 포함시켜 제조물책임법을 연구

함과 동시에 골판지업계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1996년 10월 동 연구회는 협의 결과

- 설계 · 제조과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함에 관한 PL 대책
- 제품의 목적 외, 용법 외의 사용에 의한 손해 발생의 방지
- PL에 관한 클레임 처리 매뉴얼
- PL 문제에 관련하는 계약의 관리 · 주의점

의 4 항목을 주축으로 하는 「PL 대책 가이드라인(사례연구)」를 발간하고 제조물책임법의 해설은 근거로부터 제조물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방법, 만일 소송을 일으킨 경우 대응책, 단골거래처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식을 회원에 제공하는 동시에 각 사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와 대응을 요구했다. (상세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

골판지는 불특정 다수의 물품포장 · 용기이고 게다가 유통자재 외에도 학교교재나 주택용재 등 그린대로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을 접하고, 계속해서 소송 등의 사례나 대응책 등을 조사, 연구함과 동시에 관련되는 정보나 자료 수집에 애쓰고 있다.

3) 순환형 사회형성 관련법

1) 법률의 목적

일본에서는 폐기물이나 리사이클의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의 정비가 꾀하여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래와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긴급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발생량은 높은 수준으로 추이

근년 일반 폐기물은 약 5천만톤, 산업 폐기물은 약 4억톤으로 추이

② 수준을 밀도는 리사이클 추진

1996년도의 리사이클율은 일반 폐기물이 약 10%, 산업 폐기물이 약 42%

③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곤란성

1996년도의 최종 처분장의 잔여 년수는 일반폐기물으로 8.8년, 산업 폐기물으로 3.1년

④ 불법 투기의 증대

1998년도의 불법투기 건수는 1273건으로 5년간에 4.6배로 증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에서 벗어나서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리사이클을 진행함에 의해 천연자원의 소비가 억제되어, 환경에로의 부하가 가능한 한 저감되는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로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의 근거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한 7개의 법률이 정비되었다.

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관계되는 7개의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은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틀(기본원칙,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가의 시책 등)을 규정한 것이고, 2001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생 이용(Recycle) 열회 수 적정 처분으로 시작되어 법정화하고 있다.

이 기본법에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나 소비자에의 요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7가지의 개별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법 중에 「폐기물처리법」과 「자원유효이용 촉진법」은 사회 전체의 틀을 규정한 일반법이고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가전 리사이클법」「건설 리사이클법」「식품 리사이클법」은 개별의 물품 특성에 대하여 규정되어진 법률이고, 「클린 구입법」은 환경에 배려한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하여 리사이클의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1) 폐기물처리법 : 2000년 6월 개정

정식 명칭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기업에 대해서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나 불법 투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벌칙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2)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2001년 4월 완전 시행

정식 명칭은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사업자에 제품의 자원 절약화, 잔수명화 등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억제(Reduce), 회수한 제품의 부품 등의 재이용(Reuse) 및 원료로서의 재이용(Recycle), 소위 3R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는 제품의 장기사용이나 분별회수에 의 협력 등을 요청하고 있고, 1991년에 시행된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리사이클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해 분별회수의 촉진을 위하여 식별표시를 행하는 것(「지정표시제품」)으로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대상물 중에 구 리사이클법에 특정되어 있는 스틸 캔, 알루미늄 캔, 페트병에 더하여 기타 종이용기포장과 그 외의 플라스틱 용기포장이 추가되었다.

(이 법률에 대한 골판지산업의 대응은 155항 : 자원유효촉진법과 「식별표시의무」에 상술하고 있다.)

(3) 용기포장리사이클법 : 1997년 4월 시행

정식 명칭은 「용기포장에 관계되는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사용을 끝낸 용기포장을 자원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는 분별 배출 및 시, 구, 동에는 분리 수집을 요청하고 사업자에는 재상품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한 골판지 산업의 대응은 152항 : 용기포장리사이클법과 「재상품화 의무」에 상술하고 있다.)

(4) 가전 리사이클법 : 2001년 4월 시행

정식 명칭은 「특정가정용기재상품화법」. 이 법률은 폐기물의 감량과 유용한 부품 및 소재의 재상품화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는 폐기하는 제품을 소매점에로 인도하면 수집·재상품화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요청하고, 소매업자에는 제품의 떠맡음과 제조업자에로 인도하는 의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에는 제품의 떠맡음과 재상품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4개 품목을 지정기기로서 실시되고 있다.

(5) 건설 리사이클법 : 2000년 11월 시행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자재 등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건축 해체업자에게 건축물을 해체

할 때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 등 특정 폐기물을 현장에서 분별하고 자재로서 재이용하는 것을 의무를 다하고 있다.

(6) 식품 리사이클법 : 2001년 5월 시행

정식 명칭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계하는 사업자에게, 팔다 남은 물건이나 먹다가 남은 것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억제와 감량화 등에 따라 최종 처분량을 감소함과 함께 사료나 비료 등의 원재료로서 재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7) 크린(Clean) 구입법 : 2001년 4월 시행

정식 명칭은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가 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환경에의 부하가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크린 구입)을 추진한다. 크린 구입은 공급 측의 기업에 환경 부하가 적은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경제활동 전체를 변하게 하는 것이 기대된다.

4 환경보전관련법

1) PRTR법 : 2001년 7월 공포

정식 명칭은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유해성이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환경에로의 배출량을 파악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관리 개선을 촉진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보전상의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의 운용에 즈음하여 PRTR 제도와 MSDS 제도가 도입되었다.

(1) PRTR 제도의 개요

PRTR은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동등록제도)의 약어로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개별사업소 별로 그러한 물질의 환경(대기, 물, 토양)에로의 배출량과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소 외로 이동하는 량을 파악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법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르는 특

정 화학물질을 환경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용 고용자수 2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

② 법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제1종 지정화학물질 (354물질)」과 그들을 포함하는 화합물이며 자세히 특정되어 있다.

골판지 제조업에서는 첨합용 접착제(봉소 및 그 화합물), 접합용 접착제(부틸산 디-n-부틸/크실렌/톨루엔), 속건성 잉크(에틸렌 글리콜), 연료용 등유(크실렌) 등에 제 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③ PRTR 제도의 실시 기일은 특정 화학물질의 취급량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년간 취급량	배출량 파악	배출량 신고
5톤 이상	2001년 4월	2002년 4월
1톤 이상	2003년 4월	2004년 4월

● PRTR 제도에 대한 골판지 산업의 노력

화학물질의 배출량이나 이동량은 기기의 운전조건이나 원재료의 성상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측에 의해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PRTR 제도에서는 실측 이외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파악해도 좋게 되어 있다. 일본골판지공업회 환경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화학공학회의 지도를 받아서 2002년 3월에 「골판지의 PRTR 배출량 등 산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골판지 산업에 유상배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을 활용함에 따라 골판지 산업은 사업소에 있어서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이나 이동량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2) MSDS 제도의 개요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재료안전 데이터 시트)의 약어로서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타 사업자에 양도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에 그러한 화학물질의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법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대상제품을 타 사업자

에 양도 또는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업종, 상용고용자 수, 취급량 등에 의한 규제 요건은 없다.

② 법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제 1종 지정화학물질 (354물질)」과 제 1종 지정화학물질과 같은 형태의 유해성은 있지만 폭로성은 그보다 낫다고 예상된다. 제 2종 지정화학물질 (18물질)이 있고 법령으로 특정되어 있다.

③ 법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기체 또는 액체 혼합물 등으로 대상 화학물질을 1% 이상 (발암물질은 0.1% 이상) 포함하는 것이고, 고형물, 밀봉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에 제공되는 것 및 재생자원 등은 제외된다.

④ MSDS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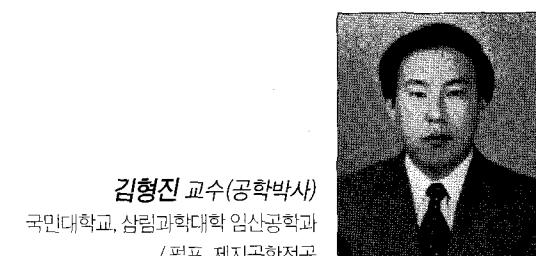
(골판지는 고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MSDS의 제공은 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되고 있다.)

2) 다이옥신 대상 특별조치법 : 2000년 1월 시행

이 법률은 다이옥신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해진 다이옥신류를 발생하여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특정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퇴출, 폐가스·연소 중 다이옥신류의 농도측정 및 측정결과의 행정에 의한 보고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골판지산업에서는 사업소 내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로가 특정시설에 해당한다.

3) PCB 폐기물처리법 : 2001년 7월 시행

정식 명칭은 「폴리염화바이페놀의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률은 PCB 폐기물의 보관사업자와 처분사업자에 매년 그 보관과 처분상황을 행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PCB 폐기물의 보관사업자는 법의 시행에서 15년 이내에 PCB 폐기물을 처분하면 안 된다.



김형진 교수(공학박사)

국립대학교, 삼립과학대학 임산공학과
/ 펄프, 제지공학전공